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60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윤준병·안호영·김 윤
박용갑·부승찬·박민규
이원택·문대림·임호선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하며, 변동성·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공개,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포

준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가축거래·거래 투명성 확보·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 등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축산물 유통”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축산물의 도매·소매

나. 가목을 위한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보관·가공·배송·포장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4. “가축거래”란 소·돼지·닭·오리·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축산물 유통시설”이란 축산물 유통산업에서 활용되는 기계·장치·장소 등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축산물 유통산업”이란 축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축산물 유통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축산물을 수집·보관·수송·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또는 산지유통인
 - 나. 그 밖에 축산물 유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축산업 경영자”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

제5조(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유통 정보화
4.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5.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지원
6. 그 밖에 축산물 유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축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축산물 유통 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급
3.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4.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의 거래수수료 등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2. 축산물 소비실태
3. 축산물 경매정보
4. 축산물 공급 등 관련 해외동향

5.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물 유통업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등 관련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 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의 협조 요청을 거절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 절차 및 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① 축산물 유통, 제1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 가축·축산물 이력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및 상담·지원
2. 축산물 유통에 관한 외국기술의 보급
3. 축산물 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등급판정
6. 등급판정에 관한 기술 개발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8.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축산물의 수출입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그 밖에 축산물 유통, 등급판정 및 가축·축산물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13. 표준거래계약서의 보급 및 계약생산·계약출하 관련 분쟁예방·

정보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

14. 축산물 수급관측 지원, 가격동향 분석 및 공표 지원

15. 축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⑧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또는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품질평가사시험의 실시 및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정한다.

제12조(품질평가사의 업무)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3.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할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17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2.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육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자격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지원 등

제14조(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2. 도매시장·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3.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거래하는 경우에 축산물 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산물 거래가격을 조사한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축산물 거래가격의 내용 및 제1항·제2항에 따른 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준거래계약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

은 제외한다)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물 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을 거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와 축산물 유통 또는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제정·개정 절차와 방법,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축산물의 품질관리

제1절 축산물 등급판정

제17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 부류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급의 표시 등)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판정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을 상장할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정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절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관리

제2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0조제8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51조제3호부터 제15호까지 또는 제52조제5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4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2.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할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

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4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4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로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조사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2.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3.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4.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3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그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27조제1항, 제30조제8항 및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장 축산물의 수급관리

제33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 종류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조절협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가축 종류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축산물 수급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가축 사육동향, 가축전염병 발병상황, 도축물량, 출하물량,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축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축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조건의 표준화,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나 그 밖의 재원을 활용하여 계약금 대출 등 필요한 금융지원 또는 기

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생산 등의 장려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몰수축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축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무부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축산물(이하 “몰수축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축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축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출하거나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축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몰수축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

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축산법」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와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7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가축시장의 운영

제40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에게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42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4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3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5조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가축거래상인의 교육 의무)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6조(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축산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47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 유통·가축거래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제1항·제8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수한 자에게 등급판정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한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한 자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장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5.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4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받은 자
6.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4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7.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8. 제2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9. 제2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0. 제2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1. 제29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2. 제2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3. 제2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4. 제2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

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5.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6. 제3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3.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0조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한 자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축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 요청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6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 거래가격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6조제2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0. 제28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31조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4.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5.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18.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9. 제45조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축

산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1조제2항은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0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포괄 승계

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를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행한 행위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축산물품질평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7조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1조에 따른 품질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사람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7조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11조에 따라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은 제17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같은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2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같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3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같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같은 법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제23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제24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8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갱신 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갱신 신청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9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제33조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입 축산물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을 받은 자로 본다.

제11조(수입이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축산법」 제45조에 따른다.

제12조(가축시장의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 개설의 등록을 한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 개설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13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은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경우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자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기한이 연장된 자는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의 기한이 연장된 자로 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축산법」의 규

정에 따른다.

제15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인증취소, 지정취소 및 조치 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가축시장”으로, “「축산법」 제34조의2”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축산법」 제40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중 “「축산법」 제40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6호 중 “「축산법」 제34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축산법」 제2조제9호”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가축시장, 「축산법」에 따른 가축검정기관”으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3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2의2.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④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축산법」 제45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법」”을 “「축산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34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 및 제5호로 하고,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⑩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과 축산물”을 “가축”으로,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가격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축과 축산물”을 “가축”으로, “가격안정·유통개선”을 “가격안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축산물의 수급 등”을 “축산업의 허가 등”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를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축산환경 개선 등”으로 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를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로 한다.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45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3의2.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수수료)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7호 중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18호까

지를 각각 삭제한다.

⑪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40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법」”을 “「축산법」·「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